

개정개요

※ 국세 반영

개정 전	개정 후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표준 공제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 <input type="radio"/>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* 추가 <small>* 「법인세법」 제57조의2</small>

 개정 내용

- 국세(소득세)에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변경함에 따라,
 - 지방소득세도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직접투자*와 동일한 방식**으로 신설
- * 세전소득 환원방식 : ①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,
②세액공제 시, 외국납부세액만큼 공제하여 이중과세 조정
- **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

 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 제10조)

■ 지방세법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지방세법 부칙 제10조(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) 제103조의 19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